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수부담금 신설〉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2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취수부담금 신설(안 별표)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 의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8. 19.

다. 회 부 일 : 2024.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취수부담금 신설(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신설>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물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수부담금

부담금은 현행법 제3조¹⁾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허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취수부담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취수부담금 관련: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취수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하여 그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취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수도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수(流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수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취수부담금을 제31조의3에 따른 유역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취수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취수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의3(유역관리기금의 설치 등) ① 유역 관계 시·도지사는 원활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별로 유역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취수부담금 및 가산금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용료·점용료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가.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등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유역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유역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유역별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

2.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3.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

4.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유역 물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유역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유역 물관리²⁾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로서 수자원의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함)에 대하여 그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취수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른 취수부담금 납부의무자]

관련 조항	납부의무자 (수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안 제3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수도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수(流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현재 수도사업자는 상수원³⁾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등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관련 법(이하 “수계법”이라 함)⁴⁾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2)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섬진강유역으로 구분

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함..

4)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하는 수계관리위원회⁵⁾가 운용·관리하는 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하여 시설 설치 등 행위를 제한하는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수자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관리 비용 부담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하천 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한 관할 시·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수돗물 생산비용의 경우 생산량 규모가 클수록 단위 비용이 낮아지는 수도사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상류 지역이 하류 지역에 비해 높은 생산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수도 서비스를 위한 재투자 여건이 취약한 구조로 인해 시·도 내 상류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주민들의 물이용 및 물관리의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⁶⁾

이에 따라 국가 주도로 운용·관리되는 수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물이용부담금과 별도로 시·도지사가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수단으로 그 관할 지역에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그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유역별 물환경 보전·관리·복원 및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경우 도입 여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⁸⁾에서는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기

6) 강원연구원, 강원도 물자치에 중앙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 취수부담금을 만들자. 2023. 5.

7)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

위하여 정부에서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①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②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④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 ⑥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취수부담금이 유역별 물환경 보전 및 관리·복원,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둘째,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⁹⁾,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어 구체성 및 명확성이

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충족되는 측면이 있으나, 취수부담금의 징수대상에 대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성 및 명확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수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하여 ‘그 사용량에 비례하게 취수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등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성 및 명확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부담금의 산정 기준 관련 유사 입법례]

부담금 종류	법률 및 조항	법률에 명시한 산정 기준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¹⁰⁾ - 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셋째,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수된 취수부담금을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유역별 물환경 보전 및 관리·복원,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10) 환경부 고시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규정

있어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과 같이 취수부담금을 수도요금에 통합하여 부과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취수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자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수계법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로 이미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해당하여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각 부담금 간 부과대상 비교]

구분	(신설) 취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u>1.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는 자</u>	(중복)	-
	<u>2.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u>	(중복)	-
	3. 유수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	-
	<u>4.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u>	-	(중복)
	5.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	-

더욱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수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게 됨.

개정안에 따라 이들에 대해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에 대한 이중 부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섯째,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¹¹⁾ 동 사안의 경우 조세보다는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여섯째,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¹²⁾, 깨끗한 식수 등의 제공을 위한 유역별 물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수부담금은 존속기한을 별도로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1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으로 ① 부담금 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¹³⁾을 제시하고 있음¹⁴⁾.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볼 때 납부의무자에 대한 취수부담금은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및 집단적 책임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취수부담금은 기존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로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¹⁵⁾ 및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대상이 중복되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¹⁶⁾에 따른 부담금 이중 부과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13)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므로, 과제의 수행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과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 여부 등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14)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15) 2023년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 (한강) 4,788억원, (낙동강) 2,349억원, (금강) 1,275억원 (영산강·섬진강) 903억원

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취수부담금 신설로 인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¹⁷⁾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등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취수부담금은 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과 징수목적 및 사용용도가 유사하여 이중부과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본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97. 「물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u>취수부담금</u>

문의처
02)6788-5153